

의안번호	2216012
의 퇴 인	복기왕 의원
회 답 일	2026. 5. 13.
추 계 번호	26B0205

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사료의 유형별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요인 분석 및 시험·연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5억원(연평균 3억원) 이상으로 추계됨
-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사료시책의 수립·시행 및 재정지원 (안 제3조제3항 신설)	300	300	300	300	300	1,500	300

주: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사업을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사업의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제1호의 2(정의) 신설	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의2. “반려동물사료”란 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<u>반려동물용 사료</u>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가. <u>반려동물완전사료</u>: 별도의 영양공급 없이 성장단계별 <u>반려동물의 영양소 요구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영양 조성이 구성되어 있는 사료</u> 나. <u>반려동물처방식사료</u>: <u>반려동물이 정상적으로 섭취, 소화, 흡수 또는 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질병·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특별히 다른 영양 요구량이나 보충이 필요한 수의학적으로 검증된 사료</u>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다. 반려동물기타사료: 반려동물완전사료 또는 반려동물 처방식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사료	
2	제3조(사료시책의 수립·시행 및 재 정지원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의 유형별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요인 분석 및 시험·연구 등에 필요한 시책 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(제3항 신설)	재량규정
		정부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시책 및 수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 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을 받은 단체(이하 “사료관련 단체”라 한다)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. (제4항)	재량규정
3	안 제27조의3(반 려동물사료 안전정 보망 구축) 신설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동물사료에 관한 정보 또는 자 료를 효율적으로 처리·관리하고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 망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료관리정보시스템 을 연계·활용할 수 있다.	의무·재량 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2조제1호의2 (정의) 신설	○	•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
2	제3조(사료시책의 수 립·시행 및 재정지 원)		
3	안 제27조의3(반려 동물사료 안전정보망 구축) 신설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 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–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사료 안전정보망을 구축·운영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 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구축 대상 정보망 규모 및 구축·운영·유지·관리 비용 등은 ISP를 거쳐야 파악이 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추계 에 한계가 있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사료의 유형별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요인 분석 및 시험·연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 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사료의 유형별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요인 분석 및 시험·연구 등을 추진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5억원(연평균 3억원)으로 추계
 - (매년) 3억원 = 5과제 × 6,000만원

[표 2]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사업 사례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연구용역 내용	2026 예산
축산시험연구 (1232-300)	반려동물사료 영양표준 연구지원	300
농산물안전성조사(농특) (6032-301)	사료표준분석법 연구(5과제×63.6백만원)	318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

[표 3] 반려동물사료 유형별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요인 분석·연구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
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반려동물사료 유형별 영양학적 균형과 위해성 요인 분석 및 시험·연구	300	300	300	300	300	1,500	300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사업의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stone@assembly.go.kr